

2022년도 제2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I. 추경예산 개요

1. 세 입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은 기정 예산과 같은 159억 1천 6백만원임.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2022년도					증감율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15,190,909	15,915,983	15,915,983	725,074	0	4.8	0	
보 조 금	국고보조금 등	15,190,909	15,815,983	15,815,983	625,074	0	4.1	0
	특별교부세	0	100,000	100,000	100,000	0	순증	0

2. 세 출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200억 4천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01억 9천 5백만원 대비 0.7% 감액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2022년도					증감율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19,389,046	20,195,120	20,045,045	655,999	150,075	3.4	△0.7	
행정관리	소 계	19,389,046	20,195,120	20,045,045	655,999	150,075	3.4%	△0.7
	행정운영경비	295,000	894,780	774,329	479,329	△120,451	162.5	△13.5
	재무활동	0	0	0	0	0	0	0
	사업비	19,094,046	19,300,340	19,270,716	176,670	△29,624	0.9	△0.2
교 부 금	0	0	0	0	0	0	0	

○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단위 : 천원, %)

세부사업별	2022 예산		2022예산 (추경예산안)	당초예산대비			
	당초	기정		증감		비율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2,506,627	2,502,427	2,352,352	154,275	△150,075	6.2	△6.0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196,849	196,849	175,555	△21,294	△21,294	△10.8	△10.8
기본경비 (자치경찰총괄과)	205,171	205,171	127,742	△77,429	△77,429	△37.7	△37.7
기본경비 (자치경찰협력과)	47,047	47,047	21,703	△25,344	△25,344	△53.9	△53.9
자치경찰공무원 후생 복지 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	2,015,000	2,015,000	2,006,670	△8,330	△8,330	△0.4	△0.4
기본경비 (자치경찰지원과)	42,560	38,360	20,682	△21,878	△17,678	△51.4	△46.1

II. 검토의견

1. 세입예산 검토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은 기정 예산과 같은 159억 1천 6백만원임.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2022년도					증감율		
	예산		추경예산	증감		증감율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15,190,909	15,915,983	15,915,983	725,074	0	4.8	0	
보조금	국고보조금 등	15,190,909	15,815,983	15,815,983	625,074	0	4.1	0
	특별교부세	0	100,000	100,000	100,000	0	순증	0

- 금번 행정국 추경 세입에서 업무이관(2022.1.1.)으로 자율방범연합회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천 1백만원을 감액하고 있는바, 자치경찰위원회는 이관된 업무로 보조금 정산에 따라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증액하여야 함에도 미편성하였음.

※ ‘서울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대하여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자치경찰위원회의 전문성을 살려 행정국(자치행정과)에서 자치경찰위원회(자치협력과)로 업무가 2022년 1월 1일 이관되었음.

구 분	이관업무	소관부서		이관일자
		현행	변경	
내 용	○ 자율방범대 지원 - 보조금 지원, 지도점검 및 정산 등 - 방범 관련 비영리단체 등록 및 관리 등	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협력과	2022.1.1.

〈 제2회 행정국 추가경정 세입예산 편성 내역 〉

(단위: 천원)

사업명 / 예산과목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증감액	증(감액) 사유
		기정	추경		
세외 수입	임시적	48,578	21,948	△26,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이관에 따른 감조정 △27백만원 (자율방법연합회 지원)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48백만원→21백만원)

- 다만, 2021년 '서울특별시 자율방법연합회'에 지원된 보조금(민간경상사업 보조) 정산에 따라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과 '기타이자수입' 등 180만원을 징수 결정을 하고 징수하였는바, 정산된 18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여야 할 것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8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200 세입수입			
	210	경상적 세외수입	
		216 이자수입	
		216-03 기타이자수입	1.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 2. 지방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 수입
	220	임시적세외수입	
		223 보조금 반환수입	
		223-02 자체보조금반환수입	1. 시·도·시·군·구에서 전년도에 보조한 보조금의 집행잔액 중에서 반납하여야할 금액을 제외한 반환수입

○ 2021년 자율방법연합회 공익활동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납부자명	세 목 명	금 액 (원)
서울특별시 자율방법연합회	계	1,802,085
	[시일반]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1,790,550
	[시일반] 기타이자수입	11,530
	[시일반] 기타이자수입	5

※ 자치경찰위원회, 2021년 자율방법연합회 공익활동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안내, 자치협력과-20575 (2022.4.11.), 2022년 7월 19일 제출자료 참조.

- 지난 「2021회계연도 서울시결산검사의견서」에서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충분히 세입이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수입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않는 것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지적하며, 예측 가능한 모든 수입을 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권고하였음.1)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았는바, 이는 세입예산 대비 결산차이가 발생할 경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어렵게 할 수 있으며, 자칫 과도한 세입결손이 발생할 경우 재정 운용상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만큼 향후 당초 세입예산편성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건정재정운영의 원칙’에 따라 세입 규모에 관계 없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모든 세입예산에 대하여 예산으로 편성되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자치경찰위원회는 2021년 반환금이 180만원에 불과하여 별도 세입 조치 없이 2023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려 하였음.

※ 2023년 세입 예산은 '22년 자율방범연합회 사업의 집행율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음.

1) 서울특별시 결산감사위원,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의견서」, 2022.5.16., 87-88면 참조

2. 세출예산 검토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200억 4천 5백만원으로 기정 예산 201억 9천 5백만원 대비 0.7%(1억5천만원) 감액하려는 것으로,
 - 자치경찰총괄과의 “기본경비(7천7백만원)”, 자치경찰지원과의 “기본경비(1천8백만원)”, 자치경찰협력과의 “기본경비(2천5백만원)”, “자치경찰위원회 운영(2천1백만원)”, “자치경찰공무원 후생 복지 증진 및 근무환경(8백만원)” 등 총 5건에 1억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

(단위 : 천원, %)

구 분	2022년도					증감율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19,389,046	20,195,120	20,045,045	655,999	150,075	3.4	△0.7	
행정관리	소 계	19,389,046	20,195,120	20,045,045	655,999	150,075	3.4%	△0.7
	행정운영경비	295,000	894,780	774,329	479,329	△120,451	162.5	△13.5
	재무활동	0	0	0	0	0	0	0
	사 업 비	19,094,046	19,300,340	19,270,716	176,670	△29,624	0.9	△0.2

가.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감액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개 사업과 기본경비 감액은 모두 시비(100%) 편성되었던 자치경찰위원회 운영비 등이 행정안전부의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지원” 사업에 따라 1차 국고보조금 6억 2천 5백만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제10차 간주처리(2022.6.28.)) 됨에 따라 시비로 편성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감액조정 하는 것으로 그 불가피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자치경찰위원회 1차 국고보조금 배분내역 〉

(단위: 천원)

내역	금액	산출근거	비고
합계	625,074		
사무실 임차료	354,000	· 6개월 임차료 책정 * 월 평균 5천만원	
청사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	4,000	· 월 전기료 30만원 단가 적용	· 감추경
자치경찰위원회 수당	75,000	· 전국 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 비용 추가 반영	
인사·고충심사위원회 수당	15,000		· 물품비 등은 기존 인사관리 운영 사업에서 사용
기본경비 등	121,434		· 기본경비 <u>120,451천원 감추경</u>
특정업무경비	10,821		· 감추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4,819		· 감추경
합동순찰차량 추가 구매에 따른 운영비용(협력과)	30,000	· 차량 개조비용 등	

※ 자치경찰위원회 별도 제출자료(2022.7.19.).

- ※ 1차로 행정안전부로부터 국고보조금 6억 2천 5백만원을 교부받았으나 교부잔액으로 2억 6천 9백만원이 있음. 그러나, 자치경찰위원회 확인 결과 교부잔액의 경우 언제 교부 받을 수 있을지 시기가 불투명함.

〈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내역 〉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 예산과목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증감액	증(감액) 사유
		기정	추경		
세출	총 계	2,502,427	2,352,352	△150,075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196,849	175,555	△21,294	○인건비성 경비 국비 지원에 따른 감소 ◦ 기간제근로자등보수(22백만원→10백만원) ◦ 특정업무경비(22백만원→12백만원)
	기본경비(총괄과)	205,171	127,742	△77,429	○기본경비 국비 지원에 따른 감소 ◦ 사무관리비(92백만원→52백만원) ◦ 공공운영비(4백만원→2백만원) ◦ 국내여비(78백만원→43백만원)
	기본경비(협력과)	47,047	21,703	△25,344	○기본경비 국비 지원에 따른 감소 ◦ 사무관리비(43백만원→18백만원)
	자치경찰공무원 후생 복지 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	2,015,000	2,006,670	△8,330	○회의 수당 국비 지원에 따른 감소 ◦ 사무관리비(10백만원→2백만원)
	기본경비(지원과)	38,360	20,682	△17,678	○기본경비 국비 지원에 따른 감소 ◦ 사무관리비(35백만원→17백만원)

※ 2021년 7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재정지원 방안을 원안 가결(제34차 본회의, '21.7.23.)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국고보조금 가내시에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재정지원이 없는 상황이었으나,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지역맞춤형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한 최소 운영경비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건의하였고, 2021년 11월 15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22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에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운영 예산이 편성되었고, 최종으로 행정안전부 사업으로 자치경찰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운영비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고자 예산 130억원을 증액하는 것이 결정되어 국회를 통과하여('21.12.3.) 최종결정되었음.

※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1.12.3., 50면 참조

II.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

2. 세출예산안 조정내역

나. 증액

(단위 : 백만원)

소관	회계	사업명	정부안	증액	비고
행정안전부	일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운영 한시지원 (정액)	-	13,000	

※ 행정안전부, 2022년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1차) 교부
통보,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2208, 2022.6.22. 참조.

2. 시·도별 국고보조금 교부 내역

(단위 : 원)

시·도	교부결정액	금회교부액 (1차)	교부잔액	비고
계	13,000,000,000	9,100,000,000	3,900,000,000	
서울특별시	892,963,000	625,074,100	267,888,900	

※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운영기구를 지원하기 위한 국고보조금은 2년간 한시적으로 지원되고, 용도는 인건비 및 운영비 등 경상적 비용에 한정되고, 1차와 2차로 나누어 교부됨.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실은 현재 중구 무교로에 위치한 무교청사를 임차하여 사용 중으로 국비지원에 따라 '22.7월 ~12월, 6개월분 임차비 2억 2천 9백만원을 금번 행정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사업의 ‘사무관리비’에서 감액 편성하고 있음.

- 다만,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지원 사업”의 국고보조금은 국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확정되어 2021년 12월 3일 정부에 이송되었음에도 행정안전부는 확정된 국비 내역을 6개월이 지난 2022년 6월에 통보·교부함에 따라,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이미 시비(100%)로 편성한 운영비 등을 감액하기 위하여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고, 2차 교부금(2억6천8백만원)은 언제 교부 받을지 시기도 불투명함에 따라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교부가 늦은 국고보조금으로 예산이 변경되는 등 자치경찰위원회의 안정적 재정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음.
 - 자치경찰위원회는 적극적인 요청 및 협의를 통해 조기에 국고보조금을 교부받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되며,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 등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또한, 중앙정부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지원 사업”을 2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자치경찰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국가보조금 교부를 통한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지원이 2년이라는 한시적인 기간으로는 부족한 것으로 보임.
- 「지방자치법」 제137조제2항에서는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치경찰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무엇보다 국가의 안정적인 재원 지원이 선행되어야 함을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중앙정부 및 국회의 지속적인 건의 등을 통한 개선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마지막으로, 올해 자치경찰 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었으나 2023년부터는 지방소비세 인상을 통한 비용보전 방식으로 변경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이 일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하지만, 행정안전부의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 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안정적인 전환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사업비의 국비분을 2026년까지 한시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바,

2) 행정안전부 예규 제188호, 개정·시행 2021.12.8.

이후에는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으로 전가 될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목적세 신설, 자치경찰 교부세 신설, 자치경찰사무 관련 교통 범칙금 지방 이양, 소방특별회계와 같은 자치경찰특별회계 마련을 위한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한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2단계 재정분권 당·정·청 합의안은 지역밀착형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등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 2022년, 2023년 2개년도에 걸쳐 총 2조 2,500억원 규모의 41개 내역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계획이며, 경찰청 소관 자치경찰사무 관련 1,133억원 규모의 예산 역시 2023년 지방이양 대상으로 계획되었음.³⁾ 또한, 이와 관련된 「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 등이 2021년 11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 목적세는 특정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과징되는 조세이고, 현재 지방교부세 중 용도가 지정된 특별·소방안전교부세가 있고, 소방의 경우에는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재정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소방재정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 있음. 따라서, 자치경찰도 ‘교통범칙금’과 ‘교통과태료’ 등을 재원으로 하는 ‘자치경찰교부세’를 신설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관계 없이 균등한 지역 치안 행정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임.

나. 집행실적 저조 사업에 대한 검토

- 2022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의 각 사업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2022년 6월말 기준 전액 또는 85% 이상 미집행된 사업들(총 57개 세부 사업 중에서 32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들에 대한 집행가능 여부와 함께 감액 조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등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3)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단계 재정분권 관계법률 국회 통과 ... 자치분권 한걸음 더, 2021년 11월 11일자 참조.

- 특히, “1인 여성가구 사회안전망 체계 구축”, “한강공원 안전확보 강화 방안” 사업 등 10개 사업은 예산이 전액 집행되지 않고 있는바, 자치경찰 위원회는 당해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바탕으로 연말에 몰아치기식 예산집행이 되지 않고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22년 6월말 현재 85%이상 미집행 사업 현황('22.6.30.기준) 〉

(단위 : 천원, %)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자치경찰 총괄과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	519,400	27,000	492,400	94.8
	서울시 치안 연계사업 지원 강화	107,200	6,000	101,200	94.4
	서울형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60,000	0	60,000	100.0
	1인 여성가구 사회안전망 체계 구축	395,000	0	395,000	100.0
	한강공원 안전확보 강화방안	22,000	0	22,000	100.0
자치경찰 지원과	자치경찰공무원 후생 복지 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	2,015,000	280,315	1,734,685	86.1
	협업치안인프라 강화	280,700	0	280,700	100.0
	지역사회안전진단 및 범죄강화	106,500	11,327	95,173	89.4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434,700	8,390	426,310	98.1
	불법풍속사범 단속역량 강화	46,100	0	46,100	100.0
	유실물업무 종합관리 운영	55,700	7,162	48,538	87.1
	지하철경찰대 등 운영 및 특수지역 경찰활동	411,910	58,795	353,115	85.7
	지하철경찰대 등 운영 및 특수지역 경찰활동(자본보조)	198,800	2,574	196,226	98.7
	관광경찰대	257,460	22,038	235,422	91.4
	관광경찰대(자본보조)	11,680	0	11,680	100.0
	학교폭력 예방활동(자본보조)	8,411	266	8,145	96.8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 체계	133,500	3,303	130,197	97.5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 체계(자본보조)	4,849	0	4,849	100.0

	여성청소년 보호활동 및 지원 (자본보조)	3,200	301	2,899	90.6
	가정폭력 등 통합솔루션팀 운영	62,400	6,945	55,455	88.9
	가정폭력학대 다기관 협업체계 강화	2,000	0	2,000	100.0
	직접경비	9,853	1,075	8,778	89.1
	협력단체 지원	481,894	902	480,992	99.8
	교통장비, 운영비	80,170	3,580	76,590	95.5
	교통장비, 운영비(자본보조)	48,170	2,660	45,510	94.5
	무인단속장비 운영	1,507,655	103,315	1,404,340	93.1
	무인교통단속장비 구매	1,221,000	12,764	1,208,236	99.0
자치경찰 협력과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	46,000	0	46,000	100.0
	지하철 안전 확보	30,000	0	30,000	100.0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교통경찰지원	280,000	21,200	258,800	92.4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	63,000	5,500	57,500	91.3
	지역맞춤형 자치경찰 주민체감 사업 (특별교부세)	100,000	8,600	91,400	91.4

전문위원	김정덕	입법조사관	최문숙
------	-----	-------	-----